#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sup>,</sup>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2-019-16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2. 11. 30.

##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교육 서비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명)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4. 1.)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6. 9. ~ '22. 9.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2.6.29.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필수) 성명, 이메일, 연락처, 주소 등 (선택) 성별, 연령대 등	'21. 11. 28 ~ '22. 6. 29.	

####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1. 4. 1.	10:20	고객이 택배사로부터 '잘못된 알림을 받았다.'는 민원 접수	
'21. 4. 1.	13:20	유출 고객 리스트 확보	
'21. 4. 1.	19:16	개인정보 유출 신고	
'21. 4. 5.	16:37	피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송부	

###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교육 서비스 이용자 82명의 이름·주소가 유출되었다.

(유출 경위) '22. 3. 31.부터 '22. 4. 1.까지 피심인의 물류대행업체(수탁자) 직원이 실수로 택배 송장 데이터 파일(엑셀)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주소에 해당 고객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결합한후, 택배사 배송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이름·주소가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되었다.

####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 나.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다.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9.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0.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가.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보호법 §39의4①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행위

## Ⅳ. 처분 및 결정

####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보호법」시행령	령 [별표2]	] 2. 개별기	준 >
-----------	---------	----------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1 2 1 3		1회	2회	3회 이상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2호의3	600	1,200	2,4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해당 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2) 과태료의 감경

과대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II— CE II I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6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과태료 산출내역 >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2년 11월 30일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강 정 화 (서 명) 위 원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서 명) 서 종 식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위 이 희 정 (서 명) 원 위 (서 명) 지 성 우 원